

# 김포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405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4. 2. 23.  
제출자 김포시장

## 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4년 2월 2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타 시·군 지방공사는 「지자체명+도시공사」 명칭을 대다수 사용하고 있음.
- 김포도시관리공사 명칭 변경을 통해 대외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공사 사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(안 제명)
  - 공사 사명 변경 : 前) 김포도시관리공사 → 後) 김포도시공사
- 나. 공사 사명 변경에 따른 조항 문구 정비(안 제1조 ~ 2조)
- 다. 사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의 개정을 명시(부칙)

## 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사명 변경을 통해 조례 제명 및 조항 문구를 정비하는 사안으로, 제230회 임시회 중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(도시환경위원회) 시 언급된 공사의 정체성, 업무 분야 및 기능 등을 고려한 사명 변경 검토요청 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- 이에, 사명 변경에 따른 권한 및 기능 변동, 기대효과 등에 대해 부서 질의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